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3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3월 3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일부 자구 및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과 맞게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“복지시설의료기관”을 “복지시설·의료기관”으로 함(안 제8조의2제2항).
- 부칙을 “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2제2항 중 “복지시설의료기관”을 “복지시설·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안 부칙을 “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<p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 교육감은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 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
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 교육감은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</p> <p>① <u>교육감은 장·단기 결석이 불가 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 여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 행한다.</u></p>